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5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35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5. 19.
판 결 선 고	2016.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0. 2기분 창업중소기업 168,672,810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5

가. 원고는 2012. 7. 24. [redacted]구 B 대 1,454㎡ 및 그 지상의 건축물 787.88㎡(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2013. 1. 21. 위 토지 지상에 건축물 420.94㎡를 증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4.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전액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가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이 사실상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방세 과세예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7. 청구를 기각하고, 2015. 10. 12.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면제된 취득세 148,354,0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450,520(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3,868,220원(가산세 포함) 합계 168,672,8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의1~2, 을4, 을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6조 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할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제12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5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6조 제6항의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는 해당한다.

(2) 설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창업을 C이 운영하고 있던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취득세의 감면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원고는 법인 등기를 준비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법무사의 말을 듣고 법무사에게 그 절차를 위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취득세 등의 감면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원고에게는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인 C은 2004. 4. 15. 개인사업체인 A(이하 '종전 개인사업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의 업태를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redacted]구 D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2. 7. 20. 공장등록을 폐쇄하고, 2012. 7. 31.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5

㈏ 원고는 2012. 7. 18. [redacted]구 E을 본점 소재지로,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 7. 20. 업태를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날 자동차용 동력장치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였다.

㈐ 원고 설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F가 원고의 주식 60%를, 배우자인 C이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 종전 개인사업체의 2012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난 매입액과 매출액 중 2012년 원고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난 거래처와 중첩되는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과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매입액]

2012년 총 매입처수	2012년 총 매입액(원)	중첩 매입처		
		순번	업체명	매입액(원)
		1	G	876,000
		2	H	873,000
		3	I	300,000
		4	J	8,790,300
		5	K	48,784,400
		6	L	56,570,400
		7	[redacted]법인	2,000,000
24	2,409,643,760	8	M	2,778,000
		9	[redacted]공사	319,811
		10	N	1,402,900
		11	[redacted]공업(주)	2,187,331,308
		12	O	853,000
		13	P	140,000
		14	[redacted]주식회사	34,916,000
		15	㈜[redacted]기공	3,220,000
		합계		2,349,155,119

[매출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5

2012년 총 매출처수	2012년 총 매출액(원)	중첩 매출처	
		업체명	매출액
3	2,585,860,258	[redacted]공업(주)	2,553,860,258

㈐ 원고의 2012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난 매입액과 매출액 중 2012년 종전 개인사업체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난 거래처와 중첩되는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과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매입액]

2012년 총 매입처수	2012년 총 매입액(원)	중첩 매입처		
		순번	업체명	매입액(원)
		1	G	392,000
		2	H	1,331,800
		3	I	1,400,000
		4	J	6,361,000
		5	K	61,882,800
		6	L	43,056,300
		7	[redacted]법인	500,000
40	2,743,902,010	8	M	1,120,000
		9	[redacted]공사	9,062,022
		10	N	1,056,600
		11	[redacted]공업(주)	1,944,193,709
		12	O	846,000
		13	P	331,000
		14	[redacted]주식회사	31,103,000
		15	㈜[redacted]인천지점	7,683,640
		합계		2,110,319,871

[매출액]

2012년 총 매출처수	2012년 총 매출액(원)	중첩 매출처	
		업체명	매출액
1	2,251,771,733	[redacted]공업(주)	2,251,771,733

㈑ 종전 개인사업체가 폐업된 다음날인 2012. 8. 1. 국민연금 가입자 지위를 상실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5

사람은 C, Q, R, S이고, 원고의 2012. 8. 1. 국민연금 가입자는 Q, R, S, F, T이다.

㈏ 피고가 2015. 5. 19.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배우자 C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의3~5, 을2의1~2, 을3, 을5, 을7의1~2, 을8의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창업중소기업 판단의 근거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도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7412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는데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5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 C이 자신이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종전 개인사업체는 C이 운영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C의 배우자인 F로 되어 있으나, 원고 주주지분은 F가 60%, C이 40%를 보유하고 있고, C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종전 개인사업체는 상호가 'A'으로 동일하고, 업종 또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동일하다.

③ 원고는 2012년 전체 매입액 중에서 약 76.9%(= 2,110,319,871원/2,743,902,010원 × 100)에 이르는 부분을 종전 개입사업체의 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하였는데, 종전 개인사업체가 위 거래처들로부터 2012년 매입한 매입액은 전체의 97.4%(= 2,349,155,119원/2,409,643,760원 × 100)이다. 나아가 원고는 2012년 매출액의 100%를 종전 개인사업체의 거래처와 거래하였는데, 위 거래처는 종전 개인사업체의 2012년 매출액의 98.7%(= 2,553,860,258원/2,585,860,258원 × 100)를 차지하고 있었다.

④ 종전 개인사업체가 폐업할 당시 C을 제외하면 Q, R, S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종전 개인사업체가 폐업한 다음날 위 Q, R, S이 원고의 직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

⑤ C은 2012. 7. 20. 공장등록을 폐쇄하고 2012. 7. 31. 종전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였고, 한편, 원고 회사는 2012. 7. 18. 설립등기가 마쳐지고, 201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5

7. 20.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C은 종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종전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사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청을 수리하는 사실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 그것을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취득세 등이 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5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감면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오해하여 신고한 것을 담당자가 일단 수리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 피고에게 질의를 한 후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비록 원고의 취득세 등 감면신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이후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설령 원고가 법인 등기를 준비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듣고 이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무사는 원고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5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홍윤하

판사 심우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5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5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5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 2011.12.31>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5.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6.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7.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5

취득하는 부동산

1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
11.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8.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제37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5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끝>